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2002. 1. 31.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1월 22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2년 1월 23일
- 다. 상정일자 : 제85회 임시회 제5차위원회 (2002. 1. 31)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김 재 형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

나. 주요골자

신정동 31번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로 현재 주민쉼터로 조성되어 있으나 주변 여건상 이용자가 없고 향후 지구단위계획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질 토지이며 단독 필지로는 활용이 부적합한 토지로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함.

▣ 재산의 표시

| 일련 번호 | 재산의 표시 | | | 추정가액 (천원) | 소유자 | 매각시기 | 매각사유 | 매각 방법 |
|----------|--------|--------------------|-------|--------------|-----|------------------|------------------------------------|----------------|
| | 지목 | 소재지 | 면적(㎡) | | | | | |
| 1 | 대 | 마포구 신정동 31번지 | 123.4 | 158,815 | 마포구 | 2002.3.4 매각예정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로 단독필지로는 활용이 부적합한 토지임. | 일반 경쟁 입찰 |

※산출근거 : 2001년도 공시지가(1㎡당 1,287천원 - 주변지가 3개소 평균지가)금액.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건물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을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임

○ 매각하고자 하는 동 재산은 마포구 신정동 31번지상의 대지로써 면적은 123.4㎡(약 37.3평)이며, 매각 추정가액은 1억 5,881만 5천원이 되겠음

○ 서강대교 북단 진입로와 서강 LG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동 재산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인접토지인 96번지 32, 33, 82호상에는 지하1층 지상8층의 오피스텔 건물이 신축 중에 있어 단독 필지로는 활용이 적합하지 않고, 현재 주민쉼터로는 조성되어 있으나 주변 여건상 이용주민은 거의 없으며 보존의 실익도 없는 방치된 나대지라고 판단되어 2001년 12월 21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변경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요지(김영식 위원) : 추정가액은?

○ 답변요지(김재형 재무과장) : 공시지가로 산정 되었으나, 매각액은 감정가가 될 것임.

○ 질의요지(김영식 위원) : 기부채납의 조건은?

○ 답변요지(김재형 재무과장) : 도로를 확보하면서 기부채납한 것임.

○ 질의요지(채재선 위원장) : 주민쉼터가 없어지면서 인근주민의 민원소지는 없는가?

○ 답변요지(김재형 재무과장) : 공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정비차원으로 쉼터를 조성하였으나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임.

○ 질의요지(채재선 위원장) : 쉼터 등의 건립은 앞날을 예측하여 신중히 하여야 하며,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쉼터를 금방 매각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기 바람.

○ 답변요지(김재형 재무과장) : 알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 |
|----------|--|
| 의안 번호 | |
|----------|--|

제출일자 : 2002. 01.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

2. 주요골자

신정동31번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로 현재 주민 쉼터로 조성되어 있으나 주변 여건상 이용자가 없고 향후 지구단위계획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질 토지이며 단독필지로는 활용이 부적합한 토지로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함.

재산의표시

| 일련 번호 | 재 산 의 표 시 | | | 추정가액 (천원) | 소유자 | 매각시기 | 매각사유 | 매각 방법 |
|----------|-----------|----------------|-----------|--------------|-----|--------------------|---|----------------|
| | 지목 | 소재지 | 면적 (㎡) | | | | | |
| 1 | 대 | 마포구 신정동31번지 | 123.4 | 158,815 | 마포구 | 2002.03.04 매각예정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로 단독필지로는 활용이 부적 합한 토지임. | 일반 경쟁 입찰 |

※ 산출근거 : 2001년도 공시지가(1㎡당 1,287천원 - 주변지가 3개소 평균지가)금액.

3. 근 거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6호 (1999. 8. 31)
- 지방재정법 제83조 제1항 (1999. 1. 21)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2000. 10. 20)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2001. 9. 15)
- 서울특별시마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 (2001. 1. 13.)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매각재산의 표시

【재 산 현 황】

| 연번 | 재 산 의 표 시 | | | 추정가액 (천원) | 소유자 | 매각시기 | 매 각 사 유 | 매각 방법 |
|----|-----------|----------------|-------|--------------|-----|--------------------|--|----------------|
| | 지목 | 소재지 | 면적(㎡) | | | | | |
| 1 | 대 | 마포구 신정동31번지 | 123.4 | 158,815 | 마포구 | 2002.03.04 매각예정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 로 단독필지로는 활용이 부적합 토지임. | 일반 경정 입찰 |

※ 산출근거 : 2001년도 토지 개별공시지가 1㎡당 1,287천원 (주변3개소 평균지가)

□ 일반현황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 저촉사항 없음.
- 토지이동내역 : 1999. 7. 24. 마포구로 소유권 이전(기부채납자 : 신정구수재건축주택조합)
- 토지이용상황 : 나대지로 벤치(2개)와 소량의 나무가 식재된 상태임.

□ 기타사항

- 2002. 01. 16. : 공유재산 매각계획(안) 수립
- 2002. 01. 18. :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적정 결정

□ 공유재산 매각 이유

- 상기 공유재산은 서강대교 진입로와 서강LG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토지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재산으로 단독필지로는 활용이 부적합한 재산임.
- 현재 주민 쉼터의 이용 목적으로 벤치 2개와 소량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주변은 주택밀집 지역이 아닌 외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자가 거의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임.
- 지방재정법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 가능한 재산이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함.

첨부 :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

매각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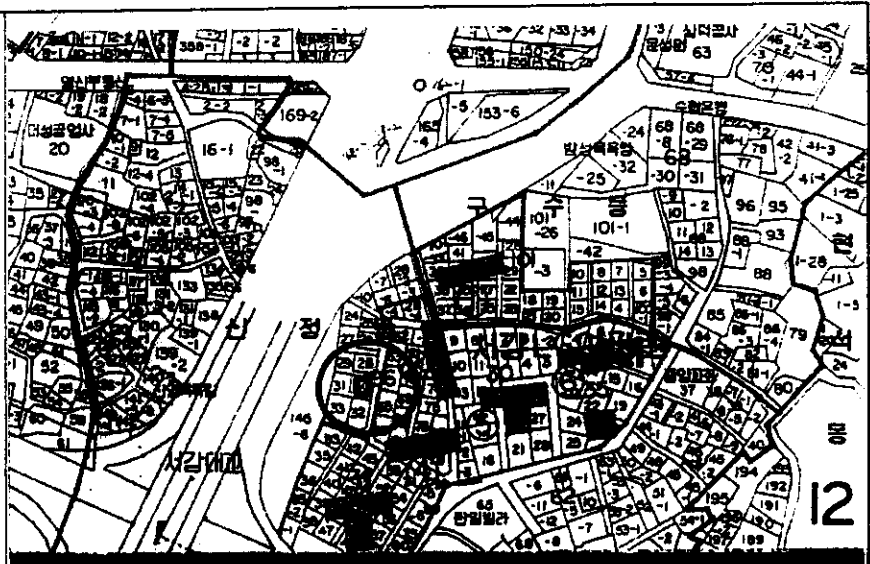
| 일련 번호 | 재산의 표시 | | | | 매각 대상 수량 | 과 표 또는 평가액 | 매각 시기 | 매 각 사 유 | 매수 희망자 주소, 성명 | 비 고 |
|----------|--------|----|--------------------------|------------|----------------|------------------|-----------|---|------------------------|--------|
| | 구분 | 지목 | 소 재 지 | 일단의 수 량 | | | | | | |
| 1 | 토지 | 대 | 마포구 신정동 31번지 (1필지) | 123.4 | 123.4 | 158,815 | 1/4 분기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로 단독 필지로는 활용이 부적합한 재산임. | | |

구유잡종재산 매각대상 현황도 및 위치도

위 치 도

□ 대상 토지
○ 신정동 31
(대 1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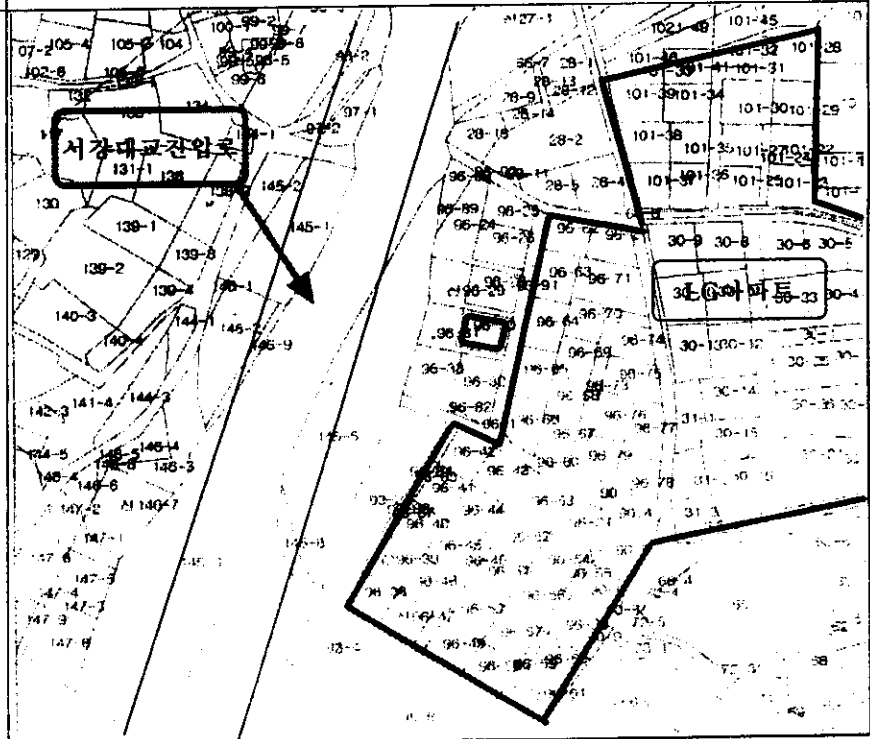
■ 매각대상지



현 황 도

□ 대상 토지
○ 신정동 31
(대 123.4㎡)

■ 대상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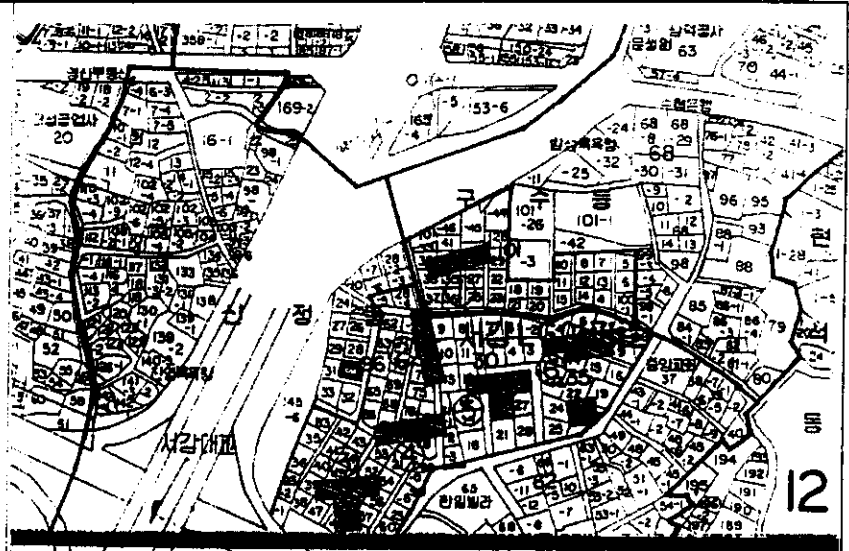


구유잡종재산매각대상현황도및위치도

위치도

□ 대상 토지
 ▷ 신정동 31
 (대 123.4㎡)

■ 매각대상지



현황도

□ 대상 토지
 ▷ 신정동 31
 (대 123.4㎡)

■ 대상토지

